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신규상장법인 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등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198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4
1. 신규상장법인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4
2.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한 정비	11
3.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정비	2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 부
2. 제 안 일 : 2024. 7. 24.
3. 회 부 일 : 2024. 7. 25.

II. 제안이유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 등을 이유로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상장 직전 반기·분기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의 주요사항에 관한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제출사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가.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안 제160조제2항 신설)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의 상장 직전 반기·분기 재무정보는 공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까지 상장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상장 직전 반기·분기보고서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안 제161조제1항)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는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로 하고 있으나, 전환사채권의 발행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가 주주나 투자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의 합리적 조정(안 제429조제3항)

1)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 투자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가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일일평균

거래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2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하고 있어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이 더 낮게 산정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2)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함.

라.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 상향 조정(안 제429조제4항)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시의무 등 다른 의무 위반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설정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

IV. 검토의견

1. 신규상장법인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 개정안은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기·분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생략)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최초로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 전단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

현행	개정안
	을 통하여 이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① -- ----- 제15 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 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 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
②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종속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 ----- 사업보고서등----- ----- ----- ----- ----- -----.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제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 및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u>사업보고서등과 그 첨부서류</u> ----- ----- -----

현행	개정안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5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② (생략)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59조 및 제160조에도 불	③ -----

현행	개정안
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은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 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u>사업 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u>이 필 요하다고 미리 합의하고 제159 조제1항 및 제160조에 따른 사 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만료 7 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 하여 사업보고서등 제출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 출할 수 있다. ④ (생략)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 12. (생략)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 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 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	----- ----- ----- <u>사업보고 서등(주요사항보고서는 제외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 출기한 연장</u>-- 제160조제1항에 따른 ----- -----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444조(벌칙) -----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 ----- ----- ----- ----- -----

현행	개정안
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 ----- ----- --제160조제1항 후단----- ----- ----- ----- ----- ----- -----
가. ~ 사. (생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14. ~ 29. (생략)	14. ~ 29. (현행과 같음)

□ 사업보고서는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상황·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증권시장에서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등으로 하여금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1)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 금융용어사전, 2024.8.14. 조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

-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을 주권상장법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주권 외의 지분증권 등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주권 및 주권 외의 위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서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으로 하고 있음.

[표1] 연도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현황

(단위: 개사)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583	2,665	2,696	2,808	2,969	3,054	3,166

주: 12월 결산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 한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반기보고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간의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 간의 사업보고서)를 각각 반기 또는 분기가 경과한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함.³⁾

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사업보고서가 1사업연도의 실적을 반영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최근 기업의 실적이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투자판단에 활용되는 정보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신의 자료가 반영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한 것임.⁴⁾

□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 대하여 상장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⁵⁾ 반기 또는 분기보고서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무정보 공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예를 들어, 8월 말에 신규로 상장하는 법인은 상장 후 5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반기보고서(6월말 기준 재무정보 공시) 제출 의무는 없기 때문에, 다음 분기보고서(9월말 기준 재무정보 공시) 제출기한인 11월 중순까지 해당 신규상장법인에 대한 재무정보 공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참고로, 2022년 신규로 상장한 79개사 중 66개사(83.5%)가 상장 직전 반기·분기 재무정보를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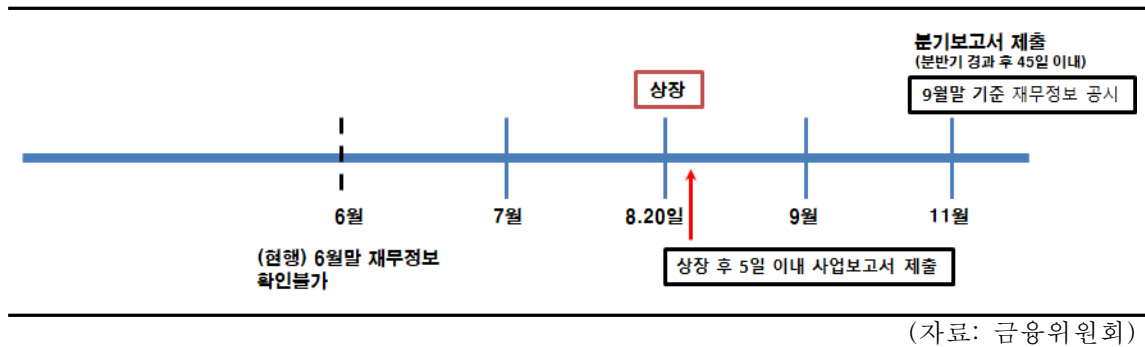
4) 이상복, 『자본시장법』 (제12판), 홍문사, 2022.1.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③ 최초로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표2]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공시 사례



- 이에 개정안은 최초로 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기·분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신규 상장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장 직후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상장기업 등의 재무정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공시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한 정비

- 개정안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제출해야 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에서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 ----- ----- -----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까지, 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주요사항보고서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영업활동 등에 관하여 주요사실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임.

○ 사업보고서로 대표되는 정기공시제도는 과거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만을 나타내므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영, 증권의 권리내용 또는 가치변동에 관한 적절한 판단자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수시공시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주요사항보고서는 그 대표적 사례 중 하나임.⁷⁾

□ 현행 「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 각호에서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7) 이상복, 『자본시장법』 (제12판), 홍문사, 2022.1.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그 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제9호에서는 제출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⁸⁾

○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1조제3항⁹⁾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로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을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4. 이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을 때
 6.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8.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할 것을 결의한 때
 9.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③ 법 제16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된 때
 2. 제16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3. 해외 증권시장에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가 결정되거나, 상장 또는 상장폐지된 때 및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 또는 법 제4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 거래소(이하 “외국 거래소”라 한다) 등으로부터 주권의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그 밖의 조치를 받은 때
 4.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다만, 해당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다른 법인의 지분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이 호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 미리 정한 가액으로 그 지분증권등을 양도(제2항제1호·제5호에 해당하는 양수·양도로 한정한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 체결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6.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 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전환사채권¹⁰⁾·신주인수권부사채권¹¹⁾ 또는 교환사채권¹²⁾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를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로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를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전환사채권 등의 발행이 주식가치 희석화에 따른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권리의 행사를 통해 신주가 발행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교환사채의 경우 유통주식의 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주식가치의 희석화에 따른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가능성이 있다는 특성이 있음.

□ 그런데, 현행법령에서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일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주주가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전환사채 등의 발행방식은 일반적인 회사채 발행방식과 동일하게 공모(公募) 또는 사모(私募) 발행으로 구분됨.

10)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는 발행회사 주식(신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로, 「상법」 제513조는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1)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란 사채권자에게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 「상법」 제516조의2는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2) 교환사채권(Exchangeable Bond; EB)이란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로, 「상법」 제469조는 회사가 주식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공모”는 「자본시장법」상 모집과 매출을 의미하는데, 모집은 불특정다수(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매출은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 또는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각각 정의¹³⁾할 수 있으며,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¹⁴⁾할 수 있음.
- 최근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발행현황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사모방식의 전환사채 발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3] 연도별 주권상장법인 전환사채 발행 규모

(단위: 건,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공모	3	907	4	5,510	3	4,300	3	535	2	510
사모	463	77,438	488	71,145	591	102,072	343	61,170	364	57,659
합계	466	78,345	492	76,655	594	106,372	346	61,705	366	58,169

주: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건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 한편, 전환사채 등의 발행은 발행결정(이사회 결의) 이후 납입기일 까지 사채금 납입이 완료되면 그 절차가 완료되는데, 납입기일의 최소 7일 전에 증권신고서가 제출(발행공시)되는 공모방식과 달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사모방식의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주요사항보고서(유통공시)가 제출된 후에야 기존 주주 등이 전환사채 등의 발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발행인은 공모방식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발행공시)해야 하고¹⁵⁾,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최소 7일이 경과하여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며¹⁶⁾, 신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증권의 거래는 제한되므로¹⁷⁾ 발행인은 납입 기일의 최소 7일 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반면, 사모방식의 전환사채 발행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요사항보고서(유통발행)을 통해 최초로 전환사채 등의 발행결정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음.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①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 한다.

2.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5일. 다만,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0일,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주식(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1조(거래의 제한) ① 제120조에 따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4] 공모와 사모간 전환사채 발행절차 비교

공모	사모
① 이사회 결의(발행결정)	
② 증권신고서(발행공시) 제출* * 금융위가 증권신고서 수리한 날부터 7영업일 경과해야 납입, 발행 가능 → 납입기일의 <u>최소 7일전 증권신고서 제출</u> (자본시장법 §120, §121)	② 증권신고서(발행공시) 제출의무 없음
③ 주요사항보고(유통공시) 생략 가능	③ 주요사항보고(유통공시)
④ 납입기일 ※ 증권신고서 수리 후 최소 7일 경과 후 可	④ 납입기일 ※ <u>발행결정일과 같은 날로 설정 可</u>
- 인수자는 납입기일까지 사채금 납입→ 납입시 전환사채 발행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현행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한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결정일의 다음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행결정일과 납입기일이 동일한 날로 설정될 경우 기존 주주들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절차 완료 후에야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권익을 보호 받기 위한 기간을 부여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예를 들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전환사채가 발행되어 주주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주주는 「상법」상 전환사채발행 유지청구권¹⁸⁾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청구는 전환사채의 납입기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18) 「상법」

제424조(유지청구권) ①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516조(준용규정) ① 제346조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판례¹⁹⁾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발행결정일과 납입기일이 동일하게 설정될 경우 주주는 유지청구권 행사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전환사채권 등의 발행결정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제9호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납입기일 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전환사채 등의 발행사실이 공시되도록 하여 주주의 권리 행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① 이처럼 법인과 투자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²⁰⁾와 제출기한을 모

19)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판시사항】

[3] 전환사채발행유지 청구의 행사 기한 및 전환사채권자의 전환 청구 이후에 주식전환의 금지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3] 전환사채발행유지 청구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의 유지를 청구하는 것으로서(상법 제516조 제1항, 제424조),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 즉 전환사채의 납입기일까지 이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전환사채권자가 전환 청구를 하면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주어야 하는데, 전환권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 당연히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여 전환사채권자는 그 때부터 주주가 되고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상법 제516조, 제350조) 그 이후에는 주식전환의 금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될 것이다.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③ 법 제16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② 개정안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요건 각각에 대한 제출기한을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입법취지에 비해 행정입법 위임사항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 ③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한의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²¹⁾ 법인 등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인 “전환사채 등의 발행결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그 제출기한은 “발행결정일과 납입기일의 일정기간 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로 법률에 명시하여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법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²⁾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다만, 해당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22)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발행결정일과 납입기일의 7일 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 제출기한을 규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3.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정비

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개정안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하거나 중요사항을 미기재·허위기재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의 한도와 관련하여,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그 상한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고,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일평균거래금액의 10%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 상한을 10억원, 일평균거래금액의 10%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을 20억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안 §429③ 본문).

현행	개정안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①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5조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나 같은 항 제6호의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u> ----- ----- ----- -----

현행	개정안
1.·2. (생략) ② (생략) ③ <u>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u>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u>100분의 10</u> (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u>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u>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금융위원회는</u> ----- ----- ----- ----- ----- ----- ----- ----- ----- ----- <u>100분의 10(10억원 미만이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억원,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u>-----. 1. <u>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u> ----- ----- ----- -----

현행	개정안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 ⑤ (생략)	2.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 ④ ~ ⑤ (생략)

□ 과징금은 법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의 환수라는 성격과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금전적 수단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갖는 행정제재로서,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사업보고서 등의 미제출 및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미기재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과징금의 법정한도는 상장법인의 경우 정률방식(직전 사업연도 일평균거래금액의 10%, 20억원 상한)으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정액방식(20억원)으로 결정됨.

○ 그런데, 기업에 대한 인지도, 주식 거래의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상장법인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과징금 부과한도액 산정방식의 차이로 주식 일평균거래금액이 적은 상장법인의 과징금이 비상장법인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과징금 상한이 일평균거래금액의 10억원~

20억원의 범위에서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장법인의 과징금 상한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려는 것으로,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의 과징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표5] 개정안에 따른 과징금 상한 변화

구분	현행		개정안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최대	직전연도 일평균거래금액의 10% (20억원 상한)	20억원	직전연도 일평균거래금액의 10% (20억원 상한)	<u>10억원</u>
최소	-	-	<u>10억원</u>	

나. 대량 보유 보고의무(5%를)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 상향

- 개정안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429④ 본문).

현행	개정안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 ③ (생략)	① ~ 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④ ----- ----- -----

현행	개정안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u>10만분의 1</u>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 ----- ----- <u>1만분의 1</u>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 대량 보유 보고(이하 “5%룰”)란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신규보고), 이후 보유주식이 주식 총수의 1%이상 변동하게 된 경우 (변동보고), 또는 보유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변경보고)에 보유상황, 보유목적 등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임²³⁾.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

○ 금융위원회는 5%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5억원을 상한)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⁴⁾

□ 그런데, 현재 증권신고서 제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등 다른 공시의 무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에 비해 5%를 위반에 대한 과징금 수준이 현저히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실제로 2023년 기준 5%를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과징금은 평균 약 21만원 수준으로, 증권신고서(6,400만원), 주요사항보고서(1억 75만원), 정기보고서(5,400만원)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에 비해 크게 적은 수준이며,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표6] 연도별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평균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5%룰	192,670	275,621	3,026,712	215,205
증권신고서	51,360,000	130,385,714	36,257,143	64,050,000
주요사항보고서	-	12,200,000	73,750,000	100,750,000
정기보고서	82,333,333	20,000,000	-	54,400,000

(자료: 금융감독원)

고하여야 한다.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④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0만분의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47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이에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한도를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기존보다 10배 상향하는 것으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주권상장법인의 지분 집중 관련 정보를 시장에 적시에 공개하도록 하여 적대적 M&A 등 경영권에 대한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고, 일반투자자 등의 투자 전략과 지분보유 상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111